



'05. 7. 20.

-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  
審 查 報 告 書



企劃行政委員會

-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

# 審 査 報 告 書

2005. 7. 20.  
제240회 정례회

## 1. 심사 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05년 7월 5일

○ 회부일자 : 2005년 7월 6일

다. 상정일자 : 제24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 2005. 7. 14 :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의,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심사의결

##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자치행정국장 김 재 욱)

가. 제안 이유

○ 화재 등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날로 증가  
추세에 있는 소방행정 수요에 능동적 대처를 위한 낡고 협소한  
소방청사를 이전 신축하기 위하여

○ 청주동부소방서 보은파출소 이전신축 계획을 제233회 도의회  
의결을 받은 바 있으나, 신축부지의 변경이 불가피함에 따라

- 지방재정법제77조(공유재산관리계획) 및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제37조(공유재산관리계획)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을 수립하여 도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함.

## 나. 주요 내용

### □ 재산의 취득

#### 《 청주동부소방서 보은파출소 청사이전 신축 》

- 위 치 : 보은군 보은읍 죽전리 96-8번지 등 4필지
- 사업내역
  - 토지매입 : 4,522㎡(1,367평)
    - 보은 보은 죽전 96-8 답 1,626.0㎡
    - 보은 보은 죽전 96-9 답 298.0㎡
    - 보은 보은 죽전 96-10 답 1,478.0㎡
    - 보은 보은 죽전 96-18 답 1,120.0㎡
  - 건물신축 : 지상2층 1,320㎡(철근콘크리트 스투브)
- 사업기간 : 2005~2006(2년간)
- 사 업 비 : 1,600백만원(도비 1,600)
- ※ 주요변경 내역
  - 매입면적 : 3,154㎡ → 4,522㎡
  - 매입대상 : 보은 이평 93 등 2필지 → 보은 죽전 93-8 등 4필지
  - 사 업 비 ; 1,970백만원 → 1,600백만원

### 3. 검토보고 요지

#### (기획행정전문위원 이상만)

- 제출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 청주동부소방서 보은파출소 청사이전과 관련한 것으로서,
  - '94년 건축된 보은군 보은읍 교사리 소재 현 청사(부지 557㎡, 건물 301.4㎡)는 넓고 협소할 뿐 아니라 경사진 진입로는 출동시 안전사고를 유발 가능성이 있어 그 동안 청사 이전 신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 특히 119특수구조대 발대 등 기구가 확대되면서 사무실 및 차고의 부족사태를 초래, 옥외 주차도 감수해야 하는 등 어려운 실정임
  - 이에 따라 지난 제233회 임시회에서는 사업비 19억 4천만원을 투자하여 보은읍 이평리 93번지 일대 부지 3,154㎡에 지상 2층 규모(연건평 399평)의 청사 이전 신축계획을 동의한 바 있음.
  - 그러나 이후 사업추진과정에서 토지소유주가 자신이 예상한 가격 보다 감정평가액이 낮게 책정됨으로써 실질적인 매매협약이 잘 이뤄지지 않아 부득이 이전대상지를 보은읍 “이평리”에서 『죽전리』로 변경하게 되었음.
  - 사업규모에 있어서는 건물면적은 변동이 없지만 토지면적은 당초 3,154㎡에서 4,522㎡으로 1,368㎡가 증가하였음에도 전체 사업비는 3억 7천만원이 감소한 16억원임.
- 검토결과,
  - 예상치 않은 사유로 보은파출소 이전 대상지를 이평리에서 입지 조건이 대체로 양호한 죽전리로 변경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은 없음.

- 다만 이전에 따른 현청사소재지와 신축예정지와의 제반출동여건과 도로사정 등은 어떠한 지와 소방파출소 입소에 따른 인근 주민들의 민원제기 가능성, 그리고 무엇보다도 신축예정지 토지소유자의 확실한 매도의사 확인여부 등에 대해서는 보충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생략”

6. 심사 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의안  
번호

327

제출연월일 : 2005년 7월 5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 1. 제안사유

- 화재 등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날로 증가 추세에 있는 소방행정 수요에 능동적 대처를 위한 낡고 협소한 소방청사를 이전 신축하기 위하여
- 청주동부소방서 보은파출소 이전신축 계획을 제233회 도의회 의결을 받은 바 있으나 신축부지의 변경이 불가피함에 따라
- 지방재정법제77조(공유재산관리계획) 및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제37조(공유재산관리계획)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을 수립하여 도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함

## 2. 주요골자

### □ 재산의 취득

#### 《 청주동부소방서 보은파출소 청사이전 신축 》

- 위치 : 보은군 보은읍 죽전리 96-8번지 등 4필지

#### ○ 사업내역

- 토지매입 : 4,522㎡(1,367평)

· 보은 보은 죽전 96-8 답 1,626.0㎡

· 보은 보은 죽전 96-9 답 298.0㎡

· 보은 보은 죽전 96-10 답 1,478.0㎡

· 보은 보은 죽전 96-18 답 1,120.0㎡

- 건물신축 : 지상2층 1,320㎡(철근콘크리트 스타브)

- 사업기간 : 2005 ~ 2006(2년간)

- 사업비 : 1,600백만원(도비 1,600)

#### ※ 주요변경 내역

##### • 토지매입

- 매입면적 : 3,154㎡ ⇒ 4,522㎡

- 매입대상 : 보은 이평 93 등~ 2필지 ⇒ 보은 죽전 93-8 등 4필지

• 사업비 : 1,970백만원 → 1,600백만원

### 3. 예산상황

(단위 : 천원)

사 업 명	재산취득	재산처분	교환취득	교환처분	출자취득· 출자처분
계	1,600,000 (도비1,600,000)				
청주동부서방서 보은 파출소 청사이전 신축	1,600,000 (도비1,600,000)				

### 4.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서 : 별첨

### 5. 관계법령 : 별첨

- 지방재정법 제77조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제29조





# 관 계 법 령 발 취

##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

지 방 재 정 법	지 방 재 정 법 시 행 령
<p>제7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p> <p>②제1항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78조(공유재산심의회)①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각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p> <p>②제1항의 공유재산심의회는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p>	<p>제84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법 제7 조 제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p> <p>②법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매입,기부채납,무상양수,환지무상귀속,교환,건물의 신·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출자,기타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처분(매각,양여,교환,무상귀속,건물의 멸실출자 기타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p> <p>1.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의 경우에는 5억원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억원이상),처분의 경우에는 2억5천만원 이상(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5억원이상 광역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3억원이상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억원 이상)이 경우 예정 가격의 기준은 토지에 있어서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로 하고, 건물 및 기타재산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p> <p>2. 토지에 있어서는 취득의 경우에는 1건당 6천제곱미터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1건당 5천제곱미터 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이상)</p>

##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및 동시행규칙】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p>제37조(공유재산관리계획)①법 제77조 및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도지사가 익년도 예산편성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전까지 의회의결을 받아야 한다.</p>	<p>제29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등)①조례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매매계약서등의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공유재산관리계획서(별지 13호서식)</li> <li>2 ~ 5호 생략</li> </ol>